서울특별시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9

제출연월일 : 2016. 1.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정비 방향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된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 조례 문구 수정

나.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및 관련 조항 삭제 (제5조 삭제)

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위법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 개정·삭제

1)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위반 과태료를 별표1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원용토록 함 (안 제6조제1항)

2) 과태료 부과 및 의견제출,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원용토록 함 (안 제6조제2항)

라. 1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포상금관련 별표1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5. 12. 3. ~ 12. 23.

(3) 규제심사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항 본문, 제4조 중 “쓰레기줄이기” 를 “쓰레기 줄이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제목 “과태료 부과기준”을 “과태료”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별표 1과 같다.”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1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관련)

(단위:만원)

신고대상	포상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가.「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1)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2)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3)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
(4)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신고포상금 제외)	없음
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1)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10
(2)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5
(3)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
(4)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신고포상금 제외)	없음

신고대상	포상금
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1)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10
(2)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5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5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10
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라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2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신고포상금 제외)	없음
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0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5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3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신고포상금 제외)	없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조(목 적)** ---------- 쓰레기 줄이기-- ---------- ---------- ---------- ---------- ---------- ---------- ---------- ---------- ---------- ----------.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 5 (생 략)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 ② ---------- 쓰레기 줄이기- ----------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쓰레기 줄이기------- ---------- ----------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②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각호 해당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태료)** ①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
<신 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조(의견진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제8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구청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7조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삭 제>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2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차등화한다	<삭 제>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삭 제>
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삭 제>
제13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삭 제>
제19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 ---------- ---------.
1.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제11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별표 1]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태료부과 및 신고대상	과태료 부과금액			포상금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나.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 영업장 총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불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별표 1]

1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관련)

(단위 : 만원)

신고대상	포상금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1)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2)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3)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
(4)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신고포상금 제외)	없음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경우	
(1)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10
(2)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5
(3)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3
(4)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신고포상금 제외)	없음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1)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10
(2)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5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경우	15

과태료부과 및 신고대상	과태료 부과금액			포상금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라. 영 제8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불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10	30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신고대상	포상금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10
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라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2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신고포상금 제외)	없음
사.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1)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0
(2)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5
(3)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3
(4)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신고포상금 제외)	없음

과태료부과 및 신고대상	과태료 부과금액			포상금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법 제14조)	200	300	300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 21조)	300	300	300	
6.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8.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해당연도에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